



함께 만드는 복지

코로LHIOI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종합평가.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종합평가, ▲요 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평생친구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정부가 COVAX Facility 및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5,600만명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르면 2 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백신 구매계약**은 **여러 가지 불** 확실성 속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후속 이행관리가 매우 중요하 다고 하면서, 확실한 이행담보를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을 갖추고 상대 기업들과 집요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 같은 외부 법률 자문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질병관리청에게 전담 법무팀을 구성하는 등 법률적 전문성 보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과 관련된 내부회의 자료가 사전에 인터넷에 유포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고 하면서, 중요한 방역정책이 결정되기도 전에 자료가 유출되면 국민들께 큰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 신뢰성도 크게 훼손된다고 강조하였다.
- 작년 중대본 회의에서도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 경찰청과 중수본에게 이번 자료유출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 기관장 에게도 소속 공직자들이 특별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조 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선제적 검사, 복지부·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 실태점검 등 감염예방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 * 동일집단 격리된 요양병원 14개소에서 확진자가 996명. 사망자가 99명 발생('20.12월)
- 상당수의 요양병원의 **병상이 6~7인실이면서 과밀**하고, 대부분의 환자가 **와상에 기저질환이** 있는 **요양병원의 특징에** 기인한다.
- □ 그간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시작되었고, **동일집단 격리** 중 **감염 관리**가 미흡하였다.
- 또한, 적시에 **의료자원과 전원 병상**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점이 상황을 악화시킨 주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 사전예방**, **▲ 초기대웅** 및 동일집단격리, ▲ 환자전원, ▲ 사후조치 등 각 단계별 조치가 포함된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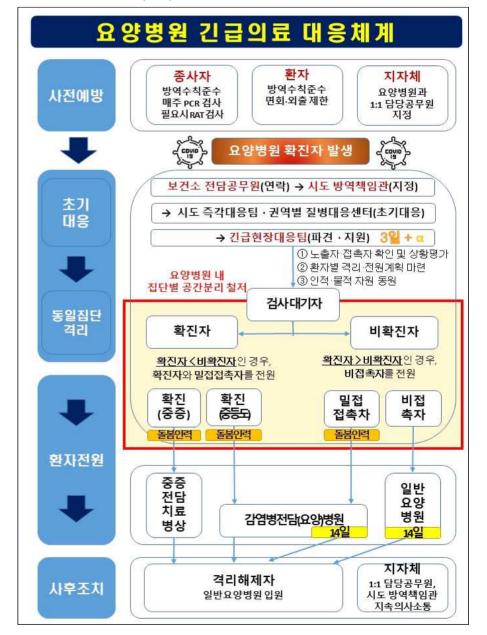






평생친구

< (그림)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 체계 >



















- □ **사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종사자 진단검사를 확대** 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로 단축하고, 고위험군·고위험 지역을 다녀온 종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업무에 투입한다. ★현행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
- 최근 종사자가 **가족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 예방수칙을 추가하여 종사자·환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또한, 요양병원과 **지자체 공무원을 1:1로 지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유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도 실시한다.
 - 확진자 발생 시, **시도 방역담당관**을 추가 지정하여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 □ 환자를 유형별로 구분·분리하여 교차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는 초기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 중수본과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으로 **긴급현장대웅팀** (3개팀)을 구성하고, **감염 발생 즉시 파견**하여 ▲노출자·접촉자 확인 및 ▲상황평가, ▲격리·전원계획 마련, ▲인적·물적 지원 등 초기대용을 지원하다.
 - * (현재) 시도+권역 질병대응센터 -> (변경) 시도+방대본+중수본+국립중앙의료원+전문가
 - **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소재 요양병원에도 중수본 긴급현장대응팀을 즉각 파견하여 방대본, 광주시 등과 함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 중
- 또한, 환자 격리 시, 환자 유형(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을 구분하고 동일한 집단별로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교차 감염을 전면 차단한다.
 - 상대적으로 교차 감염에 취약한 **간병, 식사 배식 등 돌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 □ 환자 모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원하고 남은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자원을 투입하는 체계도 마련하였다.
 - 중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용 체계를 구축하고, 확진자 발생 규모와 환자 유형(확진자, 비접촉자, 밀접 접촉자 등)에 맞추어 신속히 전원 조치한다.
 - 확진자 규모가 많은 경우, 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고, 남은 환자를 위해 의료인력 확보, 물품 지원 등을 실시한다.
 - 확진자 규모가 적은 경우, 확진자를 중중도에 따라 전담요양병원 또는 중중전담 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 비확진자는 비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하여 **14일간 격리** 하여 관찰한다.
 - 또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돌봄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병상·인력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일반요양병원**과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전원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 또는 손실보상을 통해 지원한다.
 - * 최근 집단감염 발생한 **수도권은 2개소** 이상, **부산·광주·울산·전북·전남**은 **최소 1개 이상. 그 외 시도는 예비 시설 확보**(집단감염 발생 즉시 지정)
 - 이와 함께 해당 요양병원에 필요한 **의료·돌봄인력**과 **방역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 □ 관리체계와 사후조치도 강화한다.
- **지자체 전담공무원**과 **요양병원**이 즉각 소통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격리해제자는 관련 지침 명확화*, 감염·예방 관리료 추가 지급 등을 통해 격리 해제된 이후에도 의료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 '격리 해제 이후에는 의료기관 입원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등

2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종합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12월 13일에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종합평가'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은 20일간 수도권에서 환자가 1천 명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필요 병상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병상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 이후 20일간, **총 12,031개* 병상을 확보하여 1만 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당시 가용병상(2,548병상) + 추가 확보 병상(9,483병상)
- 생활치료센터는 8,583병상을 확보하여 목표(7,000병상)의 122.6%를 달성하였고, 감염병전담병원은 2,785병상을 확보하여 목표(2,700 병상)의 103.1%, 중환자병상은 663병상을 확보하여 목표(300병상)의 221%를 달성하였다.











평생친구

-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3,574병상을 확보**(1.2.기준) 하고 있으며, 가동률 42.3%로 **7,8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8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42.3%로 **6,2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030병상을 확보**(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로 **2,46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307병상을 확보**(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616병상을 확보**(1.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191** 병상, 수도권 85병상이 남아 있다.
 - * 모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며, 그간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관리하던 중환자 치료병상은 1월 1일부터 별도 관리하지 않음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기준) >

_	구분	생활치	료센터	감염병 7	전담병원	준-중혼	가병상	중환자병상	
	TE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7	전국	13,574	7,833	7,030	2,461	307	64	616	191
수	≒도권	10,871	6,269	2,860	722	185	36	395	85
	서울	5,071	3,027	1,499	366	47	8	208	40
	경기	3,112	1,602	944	179	111	15	139	34
	인천	540	279	417	177	27	13	48	11
7	강원	164	23	233	66	5	0	20	8
충	· 청권	482	346	779	194	37	13	44	19
호	달남권	304	142	708	437	0	0	43	15
경	5 북권	818	385	1,238	622	28	12	41	26
경	명남권	735	468	879	268	47	3	69	37
7	제주	200	200	313	152	5	0	4	1













- □ 중수본과 지자체는 신속하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 생활치료 센터, 거점전담병원** 등 **새로운 병상 모델을 도입**하고, **민간 의료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다.
- 우선, 수도권 환자 치료를 위해 **신규 생활치료센터 33개소를** 설치하였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여 의료적 관리가 더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거점 생활치료센터와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 인센티브 강화(환자관리료 50~100% 인상, 파견 의료진 근무수당 50% 인상)
-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에 인력과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여 **치료병상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강화 및 손실보상 기준** 확대를 통해 **민가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중환자병상 으로 확보하도록 행정 명령하여 총 **460병상을 확보**하였으며,
 - 병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소개하여 코로나19 중환자·준중환자를 중점으로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도입하고,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비용을 조기에 지원하여 중환자병상을 신속히 확보하였다.
- □ 병상의 양적 확충과 함께 환자 배정 및 전원 절차도 개선하였다.
- 생활치료센터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고령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기준을 개선하고, 수도권 병상배정권을 한시적으로 지자체 에서 중수본으로 변경하여 신속히 병상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의료기관 배정 후에도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중환자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중상이 호전되면 중증도에 적합한 병상으로 전원되도록 조치하였고,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의 환자 배정 전담인력 확충, 생활치료센터 입소절차 간소화 등 운영 측면에서도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 □ 그 결과 **일평균 1,000명대 환자 발생에 대웅 가능한 의료 역량**을 갖추는 성과가 있었다.
 - 중증도별 환자발생 비율과 평균 재원일수를 고려했을 때, 현재 보유병상으로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확진환자가 매일 1,900여 명, 감염병전담병원은 1,500여 명, 중환자병상은 1,000여 명이 발생하는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신속한 병상확보와 병행한 운영 효율화 조치를 통해 현재 수도권 내 1일 이상 대기자는 10명(1월 3일 기준)으로 종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매일 0시 기준) >

구분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1	1.2	1.3
1일 이상 대기자(명)	158	96	63	57	23	41	27	13	10

-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별로 유행 확산 시 운영할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하는 등 전략적 병상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적정 시점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 유행에 대응하면서 도입한 감염병전담 요양·정신병원 등 특수 병상모델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또한,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중증도에 맞는 병상으로 신속히 전원하도록 보상구조 개편, 전원 책임자 지정 등 치료 현장에서 이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병상별 전원·퇴원기준을 점검하는 등 **병상 효율화 조치를 강화**하여 의료체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지난 한 주(12.27.~1.2.)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31.3명**으로 그 전 주간(12.20.~12.26.)의 **1,017명**에 비해 **85.7명 감소**하였다.
 -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3.): 2,118명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84.1명**으로 그 전 주간(12.20.~12.26.)의 **318.1명**에 비해 **34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2.6.~12.12.	12.13.~12.19.	12.20.~12.26.	12.27.~1.2.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61.7명	948.6명	1,017명	931.3명
60세 이상	219명	313.3명	318.1명	284.1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7.6명	27.3명	31.3명	24.7명
집단 발생¹⁾ (신규 기준)	54건	71건	53건	21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2.6%	27.9%	25.6%	27% (1,804/6,519)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38.3	33.5	33	34
감염재생산지수(R)	1.18	1.28	1.11	1.00
즉시 가용 중환자실	62개 (12.12.9시기준)	38개 (12.19.9시기준)	164개 (12.26.9시기준)	191개 (1.2.9시기준)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평 생 친 구

○ **수도권 환자가 65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79.1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7.~1.2.)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652.1명	68.6명	20 3명	59.6명	87명	26.3명	8.4명
확진자 수	032.18	00.08	25.5	33.08	07.6	20	0.76
60대 이상	193.6명	18.4명	8명	20.1명	29.9명	12.4명	1.7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 (1.2. 9시기준)	85개	19개	15개	26개	37개	8개	1개

- 이에 따라 **감염 재생산 지수(R)도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 하고 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총 18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3.) **총 774,594건**을 검사하여 **2,118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 수도권 : 153개소(서울 63개소, 경기 76개소, 인천 14개소), 비수도권 : 35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0,306건**을 검사하여 **9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사 56명, 간호사 260명 등 의료인력 총 53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2주간(1.4.~1.17.) 연장된 거리 두기** 조치가 시작된다며 이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약속·모임 취소, 마스크 착용, 의심 시 검사받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가 21시 이후 대중교통을 감축 운행한 결과 이용객과 대중교통 혼잡도가 감소 추세이다.
 -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해 노선별 특성, 승객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11월 말부터 20% 감축* 운행하였으며, 12 월에는 30%**로 감축 비율을 높였다.
 - * 지하철 11.27.~12.07, 시내버스 11.24.~12.04. / ** 지하철 12.08.~, 시내버스 12.05.~
 - 이와 함께 또타앱,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사전혼잡도** 예보제를 안내하여 지하철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하고, 시내 버스의 경우 혼잡도 80% 이상 발생 노선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혼잡도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1시 이후 **지하철 혼잡도는** 모두착석 또는 일부입석이 가능한 **50% 수준**이고, **시내버스 혼잡도는** 모두착석이 가능한 **32.1%수준**으로 낮아졌다.
- **경기도**는 환자의 치료·격리를 위한 **전담병원 등 1,083병상**(가동률 80.3%), **생활치료센터 3,112병상**(가동률 48.5%)을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경기도의료원** 내에 **중등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76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그간 300,696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7**66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어제도 **18**,491건을 검사하여, 44명을 조기에 확인하였다.











평생친구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2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819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64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55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14명 감소하였다.
- 어제(1.2.)는 적발된 **무단이탈자가 없었다.**
- □ 1월 2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3197개소, ▲실내체육시설 1,467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121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5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7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 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 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 5.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평생친구

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21.1.4~'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 집합금지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방상장 눈발(K)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야외스크린골프장 (밀폐형)	▶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 집합금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사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자물무열볼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평 생 친 구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u>▶ 집합금지</u>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평생친구

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21,1.4~'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누기
식당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²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71 = 11 = 21 = 12 = 21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방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m²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u>▶ 집합금지</u>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평생친구

붙임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 □ (적용범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21년 1월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 □ (적용기간)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 □ (조치내용) <u>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u>을 이유로, <u>5인 이상</u>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u>동일한 시간대, 동일한</u>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시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❷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❸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미적용
-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제외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구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
친목형성 사적모임 (예: 동창회, 회식, 잔치 등)	적용	-
▶일상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장례식 ▶시험 ▶행사	적용 제외	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적용 제외	적용 제외













평생친구

붙임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O&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❷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❸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 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❷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 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평생친구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 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O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 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가족 모임 관련

- Q7.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8.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Q9.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 까지만 가능한가요?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평생친구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3 직장 관련

Q13.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 하여야 함
- Q1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 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 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Q18.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 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평생친구

Q19.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0.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Q21.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 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기타

Q22.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 까지만 가능

















Q23.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4.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6.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평 생 친 구

붙임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지 함께 만드는 복지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워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느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평생 친구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잡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